

모호한 선거법 기준에...지자체 SNS 홍보 '속알이'

광주·전남 쇼츠 영상 등 대박에도 선관위 뒤늦은 제재로 중단 '당혹'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지역마다 '고무줄 적용'...지자체들 볼멘소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SNS 홍보에 대한 선거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속알이'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나 의회가 타 지자체의 홍보 동영상,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를 참고해 영상을 제작했다가 선관위의 뒤늦은 제재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제작한 '띄어쓰기 챌린지'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의견 제시에 따라 관련 영상을 내리고 추가 제작을 중단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중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해 도의원들을 참여시켜 1분 정도의 쇼츠 영상을 제작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땀' (유행하는 문화 요소)인 '띄어쓰기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의원들을 참여시켜 도의회의 의원들을 소개해보자는 취지였다. 전남도와 도의회 SNS 홍보 사상 처음으로 200만 조회수를 올리며 '대박'을 터트렸다.

첫 출연한 도의원은 지역구인 시골 동네에서도 아는 척을 하는 젊은층이 생길 정도로 '스타'가 됐다고 한다.

띄어쓰기 챌린지는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라는 식으로 띄어쓰기를 바꾸면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과 분위기를 표정과 동작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다.

도의회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도의회와 환경 관련 문구를 집어넣어 SNS에 올렸고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자 의원 신청을 추가로 받아 '2탄 영상' 제작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는 추가 제작에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SNS 콘텐츠 제작 시 현역 의원 출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서면 질의했고 '구체적으로 재질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가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 챌린지 방식을 활용한 영상이라도 도의회 의정 활동 범위를 벗어난 지방의회 의원 홍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첫 영상 제작 후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제지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다.

내용은 지자체 홍보물 발행 및 배부 제한에 관한 법규 요약과 제한내용, 허용·금지 사례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발행, 배부·방송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선관위의 제재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도의회는 법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영암군, 충북도의회 등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출연한 비슷한 사례의 영상은 여전히 SNS에 게시돼 있다.

영암군이 올린 홍보영상에서는 영암군수가 최

근 유행하는 '슬릭백' (미끄러지는 듯 추는 춤) 챌린지를 하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전남 도의회 사례와 유사하지만 선관위가 게재사실조차 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모든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같은 사정 때문에 사전문의한 지자체만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선관위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익 목적 캠페인'의 경우 전체적 내용과 지방의원 표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 선관위별로 다르다 보니 비슷한 영상이 허용돼 게시돼 있는가 하면, 도의회 사례처럼 '위반 딱지'가 붙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기준이라면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슬며시 올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신 때나 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사전검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검열을 의뢰해야 하는 거냐"는 불만 소리가 지 나온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의정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는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안마다 다르지만 의원 개인별이 아닌 의회차원의 홍보물이나 의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적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비 그리고 꽃비 3일 봄비가 축축히 내리는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벚꽃길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광주·전남 전지역에는 4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5mm, 전남 내륙엔 새벽까지 5~10mm의 비가 내리겠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뺑뺑이' 없게 핫라인 구축

순환 당직제 논의하기로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 권역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지 않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의대병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광주의 3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가 모여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살필 의사가 없을 경우 119와 각 병원 간부급 의사·광주시를 잇는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광주시가 제안한 응급실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 당직제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구체화 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부원장급들이 모여 논의를 했으나 각 병원별 시설·인력이 상이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 진료과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모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20~30%가 소아관련 질환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직접 만나 응급실 순환 당직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특정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별로 응급실을 번갈아가며 운영하는 순환 당직제 운영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말 안 듣는다" 학생 체벌·학대 학원강사 벌금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부과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낮 12시 20분께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인 B(16)군을 체벌하고 같은 날 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

락 사이에 나무로 된 지휘봉을 끼운 뒤 돌리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강수업에 결석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고려해 취업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 그만 마셔라"에 격분,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선고

수십년 간 가장 역할을 해온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자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흥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셔라"며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흥기에 찔려 아파트 계단으로 도주하는 아내를 따라가 재차 흥기를 휘둘렀다.

30여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아내는 보험설계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